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사용자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서는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II. 검토의견

-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첫째, 개정 대상 조문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설되는 제29조제3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기가 직접
충전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직접 충
전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한편, 현행 같은 조 제1항은 이미 본
문 외에도 그 예외를 규율하기 위해 단서를 두고 있음. 이러한
현행 제29조의 체계를¹⁾ 고려시 법문의 체계적 완결성 제고를 위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해 안 제3항을 신설하기 보다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행정입법 위임 사항으로 “충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 부칙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73조제3항제7호는²⁾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사용자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충전사업소에서 직접 충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이와 같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에³⁾ 따라 과태료 규정이 폐지되거나 완화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므로 적용례는 필요하지 않지만, 법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함. 이 법 시행 이전의 사용자의 직접 충전행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경우에도 충전사업소의 충전설비 요건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개정안 부칙에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전문위원 이 은 정)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